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6일 김포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2월 11일 라. 의 결 일 자 : 2023년 12월 11일

2. 제안이유

-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타 시·군 대비 저렴한 김포시추모공원의 자연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의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장기기증자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기증제도 제고방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에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포함(안 제2조)
- 나. 유택동산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12조)
- 다.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관내 장사시설 이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안 제12조)
- 라. 타 시·군 대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인상(안 제14조, 별표 2)
- 마.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15조)
- 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조례위임사항 반영 (안 제16조)
-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관리의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별표2]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 사용료 인상 및 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장기기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안치 限) 기준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됨.
- 안 제16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2023. 3. 28. 개정됨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 재사용・반환 신청이 없는 무연고 유골의 처리 방법을 규정함.

최근 1인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시신의 처리 방법만 확인되며 장례의식 관련 내용은 없음. 따라서 내부적으로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 절차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 확인 하고, 방침이 없다면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10. 주문사항 : 없음
- 11.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